

## 6.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4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년 6월 18일), 원안 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김정기)

#### □ 제안이유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하는 것임.
-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균등분 주민세가 개인분 주민세로 세세목명이 변경되고,
-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편되면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
- 주민세 개편 관련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신록휴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

- ▶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과 「지방세법」 의 주민세와 지역 자원시설세 관련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- ▶ 안 제5장 제10조에서는 「지방세법」 제74조의 개정<sup>5)</sup>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장의 명칭과

5) 지방세법 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개 정 전	개 정 후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균등분"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 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</li> <li>2. "재산분"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</li> <li>3. "중업원분"이란 중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</li> </ol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bottom: 5px;">▶</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개인분"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</li> <li>2. "사업소분"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</li> <li>3. "중업원분"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중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</li> </ol>

조문 중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변경하고,  
개정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조6)에 따라 구세로 전환된 개편 전  
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관련 조문 내용을 삭제  
하였으며, 「지방세법」 제78조7)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 
명시하였음.

※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역

개 정 前			▶	개 정 後		
구 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		구 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균 등 분 (사·군세)	개 인	1만원	▶	균 등 분 (사·군세)	《변경 없음》	
	개인사업자	5만원		사 업 소 분 (구·군세)	사업자	▶ 기본세액 : 5~20만원
	법 인	5~50만원				▶ 연면적 330㎡ 초과 : 250원/㎡
재 산 분 (구·군세)	사업자	연면적 330㎡ 초과 : 250원/㎡	종업원분 (구·군세)	《변경 없음》		
종업원분 (구·군세)	사업자	월급여액 ×0.5%				

▶ 안 제22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「지방세법」 개정사항을  
반영하여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음.

- 지방세법 제147조제3항 ▶ 지방세법 제147조제6항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▶ 이 개정 조례안은 세분화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 
명확성을 더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일부 세율을 인하하는 등  
시민의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「지방세기본법」 과  
「지방세법」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

6) 지방세법기본법 제11조(주민세의 특례) 광역시의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 
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.

7) 지방세법 제78조(세율)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 
정한다.

목적과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변경되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?</p> <p>○ 그렇다면, 신고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?</p>	<p>○ 이번 개정으로 시세의 일부가 구군세로 변경되는 것이지, 납부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님. 납부방식은 변경 없이 기본세는 부과납부의 방식으로, 면적과 관련한 부분은 신고납부의 방식임.</p> <p>○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음.</p>

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

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